

한경훈 / 3월+4월+5월+6월 / 실전 GS A형 / 2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득성 평점	응시인원
529059	17.5	13	18.5	14	63	1	1.10%	7	91
536022	18	12.5	17	9	56.5	2	2.20%	5	
538985	14	11.5	18.5	12.5	56.5	2	2.20%	4	
536345	18.5	13	17.5	7	56	4	4.40%	5	
535435	14.5	13	18	9.5	55	5	5.49%	5	
535456	18.5	13	17	6	54.5	6	6.59%	5	
535978	15.5	13	18	8	54.5	6	6.59%	5	
534936	16.5	10	20	7	53.5	8	8.79%	5	
535937	18	11.5	18	6	53.5	8	8.79%	6	
535940	18.5	12	19	4	53.5	8	8.79%	4	
535963	18	9.5	19.5	6.5	53.5	8	8.79%	5	
536327	16.5	12.5	18	6	53	12	13.19%	5	
535902	17	13	17.5	5	52.5	13	14.29%	6	
535936	15	12	18	7.5	52.5	13	14.29%	5	
535931	14.5	11.5	18.5	7.5	52	15	16.48%	5	
538559	15	9.5	17.5	9.5	51.5	16	17.58%	5	
535593	15	9.5	17	9.5	51	17	18.68%	5	
535915	16	11.5	16	7.5	51	17	18.68%	4	
536081	15.5	9.5	17.5	8	50.5	19	20.88%	6	
529277	15.5	11.5	16	7	50	20	21.98%	5	
535932	14.5	11.5	18	6	50	20	21.98%	5	
529402	15	10.5	19	5	49.5	22	24.18%	5	
535888	15	11.5	18	4.5	49	23	25.27%	5	
529165	13	10	13.5	12	48.5	24	26.37%	6	
536245	17	10.5	14	7	48.5	24	26.37%	5	
529237	14	12	14	8	48	26	28.57%	5	
535441	13	11.5	15.5	8	48	26	28.57%	5	
536325	14.5	10.5	17	6	48	26	28.57%	6	
528944	15	11	15.5	6	47.5	29	31.87%	4	
535906	14.5	8	18	7	47.5	29	31.87%	5	
536337	13.5	9	18	7	47.5	29	31.87%	5	
535419	11.5	12	15	8.5	47	32	35.16%	6	
534899	13.5	10.5	15	7.5	46.5	33	36.26%	5	
542719	16.5	9.5	13.5	6.5	46	34	37.36%	5	
535428	11.5	11	15	8	45.5	35	38.46%	4	
535896	12	11.5	15.5	6.5	45.5	35	38.46%	4	
535908	14.5	9	17	5	45.5	35	38.46%	5	
535895	12.5	9.5	17.5	5	44.5	38	41.76%	4	
528951	14	10.5	15	5	44.5	38	41.76%	4	
539779	13	8.5	16	6.5	44	40	43.96%	3	
528964	12.5	9	16	6	43.5	41	45.05%	7	
536142	14	9	14.5	6	43.5	41	45.05%	5	
536351	14	10	14.5	5	43.5	41	45.05%	7	
536381	16	8	14.5	5	43.5	41	45.05%	6	
535884	14	8	17	4	43	45	49.45%	5	
535945	16.5	8.5	13	5	43	45	49.45%	5	
534909	14	9	14	5	42	47	51.65%	4	
535426	10	9	16.5	6.5	42	47	51.65%	5	
536338	14.5	11.5	15.5	0	41.5	49	53.85%	4	
535750	15.5	12.5	9.5	3.5	41	50	54.95%	6	
535891	17.5	10	9.5	4	41	50	54.95%	6	
535892	12.5	11	12.5	5	41	50	54.95%	5	
535913	13.5	9.5	12	6	41	50	54.95%	4	
536480	14	9	15	3	41	50	54.95%	4	
536013	11.5	9	15	5	40.5	55	60.44%	6	
534933	12.5	7.5	13	6.5	39.5	56	61.54%	5	
535449	12	8	14.5	5	39.5	56	61.54%	5	
538209	14.5	8.5	12	4.5	39.5	56	61.54%	4	
535890	13.5	7.5	12	6	39	59	64.84%	6	
535898	14.5	8	13.5	3	39	59	64.84%	5	
535901	16.5	9.5	11.5	1.5	39	59	64.84%	6	
535918	14.5	11	11.5	2	39	59	64.84%	5	

529016	12	9	14.5	3	38.5	63	69.23%	6
535437	13	1	17	7.5	38.5	63	69.23%	4
535933	10	7.5	14	7	38.5	63	69.23%	6
535917	12.5	9	9.5	7	38	66	72.53%	6
544448	13	9.5	11	4.5	38	66	72.53%	4
534905	11.5	7.5	15.5	3	37.5	68	74.73%	4
535904	12.5	9	10.5	5	37	69	75.82%	6
535438	11.5	9.5	13.5	2	36.5	70	76.92%	4
535683	13.5	8	12	3	36.5	70	76.92%	6
535887	9.5	8	16	3	36.5	70	76.92%	5
535442	7.5	7.5	16	5	36	73	80.22%	4
528949	10.5	8	10.5	6	35	74	81.32%	4
536352	11.5	10	11	2	34.5	75	82.42%	6
535924	13.5	8.5	9	3	34	76	83.52%	6
536331	14	7.5	9	3	33.5	77	84.62%	7
534905	12.5	8	8.5	4	33	78	85.71%	5
535920	17	12	0	4	33	78	85.71%	6
535985	11	7.5	9	5	32.5	80	87.91%	5
536039	5.5	9	14	3	31.5	81	89.01%	5
544752	7.5	7.5	11	5.5	31.5	81	89.01%	5
536015	12	10.5	6.5	2	31	83	91.21%	5
528985	10	8.5	11	0	29.5	84	92.31%	6
536387	11.5	9.5	6	2	29	85	93.41%	6
535708	12.5	7	7	0	26.5	86	94.51%	5
539012	3	7	8	7.5	25.5	87	95.60%	4
534901	13	3	6	1	23	88	96.70%	3
534959	7	4	7	3	21	89	97.80%	5
539013	7.5	5	5	3.5	21	89	97.80%	6
539819	13	6	0	0	19	91	100.00%	4

한경훈/3월/실전A형/2회/1번	채점자
	김희진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짝수 회차 1번 채점자입니다.

최고점은 18.5점입니다. 중요도가 높은 판례이니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히 숙지해주세요! 각 설문마다 정보가 많아 문제풀이 시간이 길었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항상 시간 관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배점에 따른 분량 조절과 시간 관리에 유의해주세요!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판례가 그대로 출제되어 34조 1항 11호 후단과 13호가 주 논점이었습니다. 11호 전단 아니고 후단입니다!

11호 후단과 관련하여 판례 실시 취지, 식별력 손상 염려의 의미/판단기준을 차례로 적고 사안 포섭을 꼼꼼하게 해주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34조 1항 13호를 누락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회석화의 경우 심사기준에서 13호도 함께 적용되니 세트로 암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무효사유가 아닌 법조문에 관해 너무 길게 작성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강약조절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설문 2

조치 사항 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를 기재해주지 않으신 분이 많았습니다. 조치 문제는 다각적 기재가 중요하다 보니 권범심 목차가 있기만 하여도 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하여 결국 불가한 조치이지만, 조치 문제가 나올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해 가볍게라도 꼭 적어주세요!

가능한 조치인 119조 1항 1호 취소심판의 제기는 대부분 잘 적어주셨습니다. 119조 1항 3호 취소심판 제기는 기간도과의 문제로 불가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배점과 문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의/취지, 요건, 사안 정도로 목차를 잡고 적어주신 분들의 경우 다양한 조치를 검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치 형 문제는 다양한 조치를 목차로 뽑아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기계적으로 외워서 작성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설문 3

‘저촉으로 인해 전용권 항변 불가’ 로 작성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설문 2에서 ‘甲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표장’ 으로 주어졌기에 데이터 팩토리 판례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의 범위 관련 판례를 작성하신 경우 丙의 사용에 관한 실체 판단은 오픈해두었습니다. 항변은 어디까지나 주장이므로 ‘항변해볼 수 있다.’ 정도로 결론을 작성하는 편이 방어적일 것 같습니다.

3. 소결

LEGO 판례는 앞으로도 정말 많이 보게 되실 판례이니 실제 시험장에서는 지금의 답안보다 훨씬 잘 쓰게 되실 겁니다! 주 논점이 확실한 문제이니 사안 포섭과 강약 조절을 신경 써서 대비해주세요. GS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데 건강 관리 유의하세요! GS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경훈/3월/실전A형/2회/2번	채점자
	김정석

1. 전반적인 총평

레드볼 판례를 타겟으로 한 문제이고, 13호 관련 중요 판례이니 이 기회에 확실히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향 화살표’는 분량을 좀 더 늘릴 것, ‘하향 화살표’는 부 논점이므로 분량을 줄일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설문 1은 만점 3.5 / 최고점 3.5점이며, 설문 2는 만점 10.5 / 최고점 10점이며, 문제 2번 최고점은 13점입니다.

GS 첫 주차므로 종합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 ① 가독성을 신경 써주시고, 만약 도저히 못 고치겠다면 자음을 크게 쓰거나 양쪽맞춤을 해서 읽기 쉽게 해주세요.
- ② “있다”와 “없다”를 구분하기 힘든 글씨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는 답안 결론의 배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로 보기는 어렵다. ~로 보인다. ~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의 이중 부정과 애매한 표현 대신, “~이다. ~가 예상된다. ~부정된다. ~인정된다.”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④ 판례 기재 시에는 되도록 판례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목차에 해주세요.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12호 후단 요건 판례를 빠뜨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호 후단은 조문이 아닌 판례로 확립된 법리이니 12호 적용 요건 판례 기재가 꼭 필요합니다. 선사오탁 판례 대신에 요건 판례를 먼저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요건 판례를 기재하셨다면 12호 후단 요건 모두를 포섭하여야 하므로, 인식도 요건 판단을 누락하신 분들은 요건 하나하나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식도 요건 누락 및 결론 틀리신 분들도 답안 내용과 분량을 고려하여 배점하였습니다.

(2) 설문 2

무효심판 문제 시 적법성 논점을 논점정리 기재 시에 짧게 치거나 한 줄 정도로 적는 것이 답안 인상에 좋습니다. 적법성 이후 본안에서는 13호라는 쟁점이 문제에서 제시된 만큼, 13호의 기본 법리와 요건을 순서대로 목차로 잡은 답안이 가장 읽기에 좋았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을 설문 1에서 하거나 아예 누락한 분들이 절반 정도 계셨는데, 13호 요건 타/외/특/표/부로 나누어 항상 모든 요건 누락하지 않도록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외국에서 특출인된 사정은 문제에서 제시된 만큼 특출인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한 내용은 굳이 두껍게 쓸 필요가 없으므로 사안 포섭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채점하였습니다.

부정한 목적 부분은 대부분 잘 써주셨으나 판례 암기의 정밀도에서 꽤 차이가 났습니다. 모두가 쓰는 판례인 만큼 암기 정밀도가 높은 분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사안 포섭 시에는 주/창/표/교/관/사/품/거 나누어서 포섭 후 '신용에 편승하려는 목적' 이라는 키워드를 살려 포섭하면 판례를 제대로 이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 시에는 대부분 도형상표 유사판단 법리를 잘 적어주셨고,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 이격적 관찰 시에는 외관의 지배적 인상을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포섭하는 것이 인상이 좋았습니다.

또한 甲의 상표가 취소사유가 있으나 이는 대상상표 적격에 문제없다는 것을 적어준 분도 몇 분 계셨는데, 이는 논점 이탈이거나 부 논점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결

이제 GS시즌에 들어온 만큼 암기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힘든 건 알지만 매주 몇 번씩 있는 GS 등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목표만 꾸준히 달성하며 정진하시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채점 및 공부 전반적인 사항에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arabica159@naver.com으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니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한경훈/3월/실전A형/2회/3번	채점자
	김수윤

1. 전반적인 총평

본격적으로 2차 시즌에 돌입하는 초입부에서 실전 2회차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A급인 로알비 판례를 모티브로 한 문제로, 쟁점이 된 부분과 판례 문구를 숙지하고 계셨다면 이를 알아차릴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채점 시 강약 조절, 사안 포섭, 답을 맞추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심결 이후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심판 과정의 조치를 적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심결에 대한 조치로 심결취소소송을 크게, 나머지를 작게 적어 주신 경우 점수를 더 부여했습니다. 33조 1항 3호를 가장 두껍게 적으시고, 나머지를 적어주는 방식으로 강약 조절하신 경우 인상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로 제척기간을 선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조 1항 7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때 이 부분을 놓쳐 유사판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3월이라 그런지 판례의 문구를 살려 사안 포섭한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상표법 과목에서는 사안 포섭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신경써주세요!

(2) 설문 2

설문을 파악하실 때 설문에서 묻는 조치의 대상주체가 누구인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119조 1항 2호와 권범심에 대해 적어주셨는데, 丙은 전용사용권자로서 '등록 관련 조치 / 사용 관련 조치' 를 검토할 때 이러한 丙의 지위를 활용하여 논리를 전개하실 경우 더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소결

첫 주라서 그런지 큰 쟁점을 놓치지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회차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suyun0670@gmail.com 로 연락 주세요.

한경훈/3월/실전A형/2회/4번	채점자
	이영민

안녕하세요! 실전A 짝수 회차 4번 문제 채점을 맡게 된 61회 번리사 시험에 합격한 이영민입니다. 간단하게 채점을 하며 느낀 점과 GS채점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 작성해 두었습니다. 공부하심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채점평

(1) 채점 방식

제가 4문을 채점한 방식은 일단 만점을 14점으로 잡았으며 주 논점이 잘 들어간 경우 점수를 부가하고 그 외 감점, 가점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였습니다.

감점 : 답을 틀린 경우, 내용이 부실한 경우, 목차 간 호환성이 떨어지는 경우 (인상적인 면에서 감점이 들어갔습니다)

가점 : 주 논점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 논점 및 선결 논점을 잘 쓰신 경우 가점을 드렸습니다. 그 외 가독성, 목차의 흐름이 좋은 경우 가점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보니 목차 옆에 적힌 부분적인 점수의 합과 문항별 총점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4번 문제 평균 점수 및 최고점

평균점수 : 5.6점

최고점 : 14점

(3) 주의할 점 및 채점 후 느낀 점

1) “예상 거절이유 검토” 관련 누락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그 거절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기회로 충분히 숙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Z상표와 관련한 인식도 판례 누락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Z이 사용한 ‘Z’는 명칭으로서 상호에 해당하기에 애초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

습니다. 그렇기에 상호로서 사용함에도 “상표로서 인식도”를 취득한 것인지 판단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3) 34조 1항 11호, 12호 목차 분리와 관련한 피드백을 드린 분이 많습니다! 일단 인식도 관련 문제가 된 이상 34조 1항 9호, 11호, 12호, 13호는 논점으로 생각해두는 것이 당연하지만(이것도 자신만의 트리거를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9호의 경우 “상표 비유사” 하여 해당되지 않는 점, 11호, 12호 관련하여 문제상 주어진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판례가 있는 점이 비추어 볼 때, 11호와 12호를 각각 목차를 따로 잡아 이러한 점을 알고 논점으로 잡았다는 것을 티를 내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목차가 되고 채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4) 34조 1항 6호 누락 多 - 다수가 누락한 편이며, 본 사안에서는 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확률이 높다보니 답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점수상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상호”가 주어진 이상 답안에서 짧게라도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답안을 쓰고 나온 후 심적으로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된 결말이 되더라도 목차로서 적어주냐 아니냐의 차이가 크기에 ‘상호 -> 34조 1항 6호’와 같은 트리거를 만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비유사 의견서 제출 관련 마이너스 요소 -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간혹 상표 비유사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답안이 있었습니다. 이미 문제에서 ‘Y’와 ‘Z’가 “유사”하다고 전제가 주어진 이상 이를 비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인식을 주어 채점 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명확히 준 조건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에 반하는 가정을 하셔서 문제를 푸는 것을 지양해 주세요!

6) 4번 문제다 보니 시간 조절 실패로 분량이 부족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시간 분배를 잘 해주셔서 끝까지 충분한 답안을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마지막으로 답안지 인상 면에서, 조치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어느 한 논점에 대해서만 두껍게 작성하신 분보다는 최대한 다각적으로 작성해주신 답안지가 인상이 좋았습니다! 또한 논거가 충분한 사안 포섭 및 목차만으로도 어떤 내용을 쓰고자 했는지 명확히 보이는 답안지가(물론 목차 내 쓰인 내용의 양도 봤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2. GS 채점에 관한 내용

우선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GS 점수 자체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저 점수가 조금 낮을 때는 이를 동기부여로 삼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하면 좋을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점수가 높게 나온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점수를 받기 좋을 수 있겠다 정도의 지표로 활용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득 때 GS 점수에 일희일비하며 좋지 못한 수험생활을 보낸 것과는 달리 GS 수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채점에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경훈 변리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소결

2회차 GS 답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채점관련 궁금한 점이나 기타 수험생활 등 무엇이든 좋으니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kjrtkdldhs@naver.com 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문-1>

I. 설 (1)

1. 무효사실 의의. 취지 - 117조

본쟁의 반복 해적수단으로 이해관계인은 무효사실 청구할 수 있다.

2. 정부

甲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근대 지명 상표 개자로서 2 상표권으로 법률상 분이익 받을 영려 있어 이해관계 인정되므로 청구인 정부 있고, 다른 부정부행 사정 분이지 않아 정법하다.

3. 34조 1항 11항 ^{한다} 여부 정규

(1) 의의. 취지

지명 상표 반복 및 수요자 혼동 방지를 위해 식별 조 실용 영려 상표 등록 불가하다.

(2) 식별력 실용 의미 취지

식별력 실용이라 지명 상표라 특정 권리 대안 연관 관계, 즉 단일 추진 가능 상시 가능 것 명 한다.

(3) 식별력 실용 판단방법 취지

양 상표간의 유사성, 수요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 상

표의 식별력 정도, 상표 식별력 손상 출처 활동 의도 여부, 실제 그러한 활동 발생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사안

① 2 상표는 DANGO, CHEM. MEDI 를 이루어진 상표로서 CHEM 과 MEDI는 각각 화학, 의약품의 줄임말로써 지정상품과 관계 고려할 때 식별력 정도나 DANGO 부호는 2015년 12월 24일 1호 결정에서 그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2 상표 마크는 DANGO 이고 甲 상표라 하면 해보면 형식이 동일하므로 의관상 동일 유무 차이가 있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 甲 甲은 2010년 국내 진출 후 대형마트 광고를 통해 2020년 9월 16일 국내 시범 시판 되었다고, ② 2은 甲의 지정상품인 안경 과 전혀 비유사한 상품이 등록 받았으나 상표 표장의 유사성으로 인해 甲의 식별력 소상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甲 실제 2 상표가 지정상품이 사용된 경우 甲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2의 상표는 3부 1항 1호 후단 유사유 존재한다.

good

4. 3부 1항 13호 여부 - 3부

(1) 심사기준

특정한 사상이 없으면 3421항 11항 후단 해당 시 3421항 13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3421항 13항 의의.처지

특정한 목적으로 국내 인식될 수도 취득한 상품과 유사 상품 출원 시 등록 불가하다.

(3) 사안

2은 지명상품인 甲 상품과 유사 상품을 등록 받은 바 ~~특정한~~ 甲의 신용에 부당 편승하려는 의도까지 있으므로 불합사유 있다.

5. 결론 - 인용심판

3421항 11항 11항 후단 13항 무합사유 있으므로 인용심판 예상 된다.

8.5

II. 소 (2)

1. 취인심판 청구

(1) 1192항 1항 1항 의의.처지

수전자 활동 방지를 위해 상품권자 고의로 부정사용 시 상품 등록 취소된다.

(2) 유사범의 사용 여부-적극

1) 활동 증가한 경우 취인

불래 등록 상품 사용하는 경우보다 실사용 상품 사용시



활동 대상 상표타의 활동 영역이 더 커지게 되었다면 유사범위 사용에 해당한다.

2) 사안

丙은 ~~특정~~ ^{특정} ~~상표~~ 상표에 도형을 추가한 한글 음영부분 생략 사용하되 이는 甲의 상표 의의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형하여 甲 상표타 활동 영역이 더 커지게 될 바 유사범위 사용이다.

(3) 활동 영역 - 지극

1) 판단방법 위사제

양 상표 의의, 현상, 관념을 의미, 가감, 지으로 비교하여 상표의 변형정도, 유사성, 사용형태,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 종합적 고려한다.

2) 사안

앞서 살펴본바 丙은 甲 상표타 의의가 유사해 보이는 방향으로 한글 음영 생략하고 도형을 추가한 바 양 상표 유사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 甲의 상표는 국내에서 지명한 상표라고 인식될 바 활동 영역 개관점으로 결재한다.

(4) 신견

지명상품의 경우 상표권자 권리가 확장되므로 (위사제) 丙의 사용으로 인해 丙 상표는 신견 (신견) 이라고 사유 있어 甲은 심판청구하여 인용신견 개려진 것이다.



2. 불사용 취소 심판 가복-각

丙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3년 지나지 않아 불 큰 이유
로 취소심판 청구시 기각될 것이다.

3. 상표권 포기. 양도 권

丙의 상표권이 취소사유가 있음을 지시한 상표권
포기. 양도 권유할 수 있다.

4. 적극적 권리방위 학인심판

甲은 丙의 상표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방위
학인심판 청구시 권리대리인 신분으로서 부정행위 각하
될 것이고, 실사용상표 대상으로 청구시 상표 비유사하
여 기각될 것이다.

5. 사용금지청구 가복-각

(1) 제명상표 배제

상표권자는 동일. 유사 상표를 동일. 유사 상품 사용하
는 경우 사용금지 청구할 수 있고, 제명상표도 마찬가지다.

(2) 사안

丙의 표장 인색인 TANGO 부름과 甲 표장은 유사하지
않으므로 동일. 유사 상표 아닌 바 사용금지청구 기각
판결 예상된다.

II. 심 (3)

1. 정당권리와 행원 가복-22

(1) 저촉되는 선출음^{음향} 상품 관련 제1항

상품법에서는 892.10821항 1항에 따라 동일·유사 범의 내에서 침해금지청구할 수 있는데, 3421항 1호, 352, 922 등 선출음주의를 기별으로 채택하는 바, 상품 저촉되는 선출음등록 상품 있는 경우 후등록 상품권자의 사용이 선출음 상품권자에 대해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사안

丙의 사용 상품과 甲 상품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丙은 자신이 등록상품권자로서 자신의 등록범위 내의 사용이라는 이유로 침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丙의 사용 상품은 등록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2. 배유자 주장

丙은 자신의 실사용 상품이 甲의 상품과 어득본분이 D와 T로써 전혀 다르므로 양 상품 배유자라고 주장해볼 수 있다.

[17.기]

가사법원! 가복, 판매, 사안대심 등 관습이다! 파이팅!



<문-2>

13

1. 설 (1) 7.5

1. 무효심판 의의. 취지 - 1172

불쟁의 반발의 해결 수단으로서 이해관계인 등은 상품권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342 항 12호 제2항 여부



상품권 통질인 영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합 무효사유 없다.

3. 342 항 12호 제2항 여부 (2)

(1) 의의. 취지

수전자 활동 방식은 위해 수전자 기인 영려 상품 등록 불가 하다.

(2) 변경 취지

정어도 국내 ~~특징~~인 ~~특징~~인 인식된 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 등 동일. 유사 상품이 출원하여 출원 활동으로 인한 수전자 기인 영려 있어야 한다.

(3) 사안

이 상품은 국내 인식도 차별하는 사실 없으므로 불합 해당 없다.



4. 결론

34조 1항 1호는 무효사유는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인용가능성은 없다

II. 설 (2)

9.5

1. 2 주장 대항성

(1) 부속 사용 취지

하나의 상품에는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도 있고, 결속 및 전권관계가 인정되는 상품이 상품을 표시하여 그 상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상품을 지칭 상품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안

본은 표아 낱어 람이 착용한 농구화 측면에 甲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히 에너지 음료를 광고하기 위해 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의 주장은 부당하다. 따라서 甲 상표는 대항대항 상품으로 볼 수 있다. → 2 주장 부당까지 시정기인

2. 34조 1항 1호 여부

(1) 34조 1항 1호 의의 취지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인식도 취득 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 혼용시 등을 불가하다.

(2) 외국 순조사 인식

甲 상표는 췌이도 농작물 운영업 관련하여 2024.6경부터 미국내 유명 상표가 되었으므로 췌이도 하나의 국어에서 인식도 취득시 불요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식도 취득으로 불요한 충족한다.

(3) 상표 유사

1) 도형 상표 유사

도형상표의 경우 의미가 주는 지배적 인상은 중심적인으로 양 상표 유사판단해야한다.

2) 사안

甲상표. 2 상표 비교해볼때 꼬리의 윤곽선 정도, 앞반의 방향, 뒷반의 모양 등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모두 이경시 관찰 시 이는 일반 순자가 인식할 수 없는 차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 상표의 의미가 주는 지배적 인상이 서로 유사한 바 양 상표 유사하다

(4) 문자 표지1) 판단 방식 유사

부차적 표지 판단시 상표의 인식도. 창작성. 포장의 유사성, 상품과의 관계, 교섭 유무 및 내용. 관계, 업무의 유사성, 거래성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안

2은 甲과 아무런 법적·경제적 관계가 없으나 양
 제품은 비교해보면 앞서 살펴본 바 이권의 지배적
 인성이 유사하고 甲 제품은 미국 유명 상표인 점,
 甲 제품은 통계를 역동적으로 형성한 것으로서
 그 창작성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양 제품을 경제
 적 관련관계를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은 모두 중
 합적으로 고려하면 2은 甲의 신용이 훼손하려고
 하거나 甲의 국내 상품 출구에 방해하려는
 등 부당목적 인정된다.

(5) 1절

2 상품 3개씩 13개 13개 해당하다.

3. 결론

2의 주장은 부당하긴 甲 무효심판 인용가능성
 있다

무효심판 인용 good

너무 긴 심판문리 하이팅!

<8-3>

16.5

I. 심 (1)

1. 심결치인소송 의의. 취지

, 법원이 위해 재판을 받은 권리 행사를 위해, 심결 당사자 등은 심결치인소송 제기할 수 있다.

2. 청구인 자격

2은 심결의 당사자로서 심결치인소송의 당사자 자격 인정된다.

3. 332 항 관련 여부

(1) 의의. 취지

자차상품식별표. 특정 지음상 없는 기술적 표상은 등록 받을 수 없다.

(2) 판단기준 제시

기술적 표상 판단시 관념.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상 등 종합적 고려하여 개량적으로 판단한다.

(3) 사안

한국 거래실상상 관련될지라 문 상권이 함유된 하차 품에 대해 ROYAL 등 포함될 지점명 다수 존재 하나 유사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ROYAL. 로얄 포함하 표상 사용 상품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甲의 등록 상표는 상품 원재료, 품질 등을 직감하
 는 표징으로 볼 수 있고, 甲 상표가 용익성 특정한
 기에 부채당한 표징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불허
 해당 없다. Good

4. 342 (하) 2항 2단

(1) 의미 차이

품질보증기능 보충을 위해 상품 품질 인 영려 상품
 등록 불가하다.

(2) 실제 취사제

수요자가 인식하는 상품과 지칭상품간 경쟁적 관련
 관계. 부신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품질인 의미 취사제

상품 품질 인이라 일반 수요자가 상품을 보고 일반
 상으로 떠올리는 상품과 지칭상품이 전혀 다른 품질
 의 인 일컫는 것은 아니다.

(4) 사안

국내 거래 실용성 관련질리타 풀은 모두 2개 제법
 피복 완화 방지하리 비용제품 원료로 사용되어 왔고
 甲 등록표징인 피까지 합성품에 다수 사용된 점,
 관련질리타 풀은 사용한 합성품에 관련이 포함된
 제품도 다수 존재하리 관련질리타 풀은 사용

하지 않은 상품이 대해서도 권리 등이 사용된 공작
 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권리'이라는 용자는 보고 일반 수요자가 일
 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품의 성질이나 유사성~~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품질면의 유사성
될 수 없기 보지 무효사유 없다.

5. 342 항 1호

(1) 의미 취지

부정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품이 등록 불허하는 규정
 이다.

(2) 사안

2의 심사대상상품과 국내·외국에서 특정인 상품으로 인식된
 사실이 불명확하므로 국내·외국에서 인식도 취득했다
고 볼 수 없는데 보지 무효사유도 없다.

6. 342 항 1호 규정 가부

(1) 무효사유 변경 - 12522호 1호

유칙적으로 심판 청구시 인지 변경할 수 있으나 청구
 이유는 ~~사실~~ 보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제척기간 - 122호

342 항 1호를 사유로하는 무효사유는 등록일 이후 5

년이 지난 경우 청구할 수 없다.

(3) 사안

2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나 甲의 출원은 2019.4.11 등록 이후 5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342 항 1호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2이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342 항 1호 주장한 경우에도 같다.

7. 결론

332 항 3호, 342 항 12호 제1, 13호 해당하지 않고 342 항 1호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기각심결 타당하므로 기각판결 유지된다.

13

II. 설 (2)

1. 사용 관련 가치

(1) 침해 여부

丙이 사용한 제품은 甲 상품과 형식이 열과 양의 차이를 거의 유사하고, 이로부터 영문 글꼴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국내 수요자가 동일·유사 상품으로 인식할 것인바 유사상품은 동일상품에 사용했고, 결론하더라도 丙이 제품사용을 심정받은 2의 상품과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적용을 행할

인정되지 않고 / 기타 침해지해. 남용 사용 보이지 않아
 甲 상표권 침해다.

(2) 민사적 권리

甲은 丙을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적 권리

丙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甲은 丙 상대로 침해죄
 고소할 수 있다.

(4) 기타

침해금지청구, 징구권 권리의 학인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등록 관련 권리

(1) 120건 의의 취지

사용권자 부당사용시 사용권 등록 취소된다.

(2) 동일·유사 사용

丙은 자신이 전용사용권 신청받은 2 상표와 허네비
 브랜드의 형식 및 관념이 동일하고 / 丙 사용상품에서
 권역보다 허네비의 상대적 식별력이 좀더 커보이는
 점, 권역은 그 품질 우수성은 나타내는 바 상대적으
 로 식별력이 약하다 / 따라서 허네비 브랜드가
 될 것인바 2 상표와 형식·관념 동일 해 유사범

의 사용이다.

(3) 혼동 영려

1) 표의기호 취사취

의견, 형식, 관념, 체제, 기호, 디자인, 디자인하여, 디자인, 유사성, 사용형태 등 종합적 고려한다.

2) 사안

甲상품 비교해볼 때 열과 열이(차이만 줄 재하인) 이같은 열을 유유에만 차이가 갈재하인 열, 관념 유사한 바 혼동 영려 인정된다.

(4) 인문

甲은 丙 제품사용권등에 대해 취소심판 청구하여 인용심판 내린 5 있다.

3. 기타

상표권자 2이 丙 사용에 상당 주의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로 19조 1항 2호 취소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5.5

확 너무 걱정하진 않습니^다 ^{수사}

<문 4> [14]

I. 예상 거절이유

1. 342 항 1항 의의. 취지

선출된 등록 상표 신용 받은 및 수요자 혼동 방지 등
위해 선출된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 동안
유사 상품 출원시 등록 불가하다.

1.5

2. 사안

2은 甲의 상표 V 등록 이후 Yet 판정이 유사한
상표 근접 동일 상품인 마우스에 출원한 바 볼
거절이유 해당한다.

+ ~~판정~~ 판정
판정 불고!

II. 2 가지

1. 무효심판 청구

(1) 의의. 취지 - (1172

불쟁의 반발청 해부 수반으로 이해관계인 등은 무효심
판 청구할 수 있다.

(2) 인용상표 심결시 취급 - 342 2항

출원상표의 등록여부결정시 기준으로 선행상표가 소멸
하는 경우 342 항 1항 의의 거절이유 극복할 수 있다.

(3) 적부

2은 甲의 상표권 침해의 자선의 상표출원이 거절된

유행시 받은 자로서 이해관계 인정되므로 청구인 233
인정되고 다른 특허법 사항 보이지 않는다.

상호관련
(340)(6)
취항연good

(4) 342 항 9항

2023년 말 2의 상품 근은 적극무한 인기를 가지게
되었으나 게임 소프트웨어라 마우스는 상품이 바뀌자
하은 받은 해당 없다. good

(5) 342 항 11항 2단

1) 의미. 취지

특지명상품 받은 위해 지명상품과 활동 영역 상호 관련
불가하다.

1.5
상호
관련

2) 사안

2023년 말 2의 상품 근은 적극무한 인기를 가지
게 될 지명상품에 해당하고, 이 그와 유사한
표장 Y를 마우스에 사용시 수아가 상품을
제출하는 영역가 있어 받은 해당한다.

→ 논리적
적극!
(범연성)

(6) 342 항 12항 2단

1) 의미. 취지

~~특지명~~ 수요자 활동 방식을 위해 수아 기안 영역
상품 등록 불가하다.

2

2) 사안

2상품 근은 2023년 말 지명상품이 2의 국내
인식도 취득했고, 세계에 따르면 지명 상품의

경우에는 비유사 상품이 해당하더라도 그 상품 용
 도, 거래실정 등 고려하여 유사자라 특정한 관계
 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불능 해당한다.
 따라서 비유사 상품인 마우스에 출원한 경우
 유사자는 ~~甲과 乙~~ 사이 특정한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 있으므로 불능 해당한다.

good

(7) 342 1항 13항

乙의 상품이 2023년 말에 지명상품이 될 바 ~~그와~~
~~유사 상품~~은 출원한 甲은 2선용 부형 편성하리
 는 부형용 목적 인정되므로 불능 해당한다!

why? 을 코코디 시술해라 good

(8) 342 2항

1) 의의. 취지

취지상판 상품의 출원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하 동일·유사 상
 품. 동일·유사 상품 출원시 ~~불~~ 불가하다.

2) 사안

甲은 乙의 상품 청구 ~~의~~ ~~상~~ 품이 ~~확정~~ 되기 ~~후~~ 3년
 이전에 ~~乙~~ ~~의~~ 유사한 상품 ~~을~~ 동일상품이
 출원한 바 ~~불~~ 무사유 있다.

(9) 1항

乙은 甲 상품 342 1항 11, 12, 13항, 3항 무사
 사유 주장하며 무사상판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심판

고로, 실의

甲 등록 후 부정사용. 부정사용 시에 반이지 않고 등록 후
3년 지내지 않았으므로 취소심판 청구 실의 없다.

실의는 부정사용으로 보거나
가처분처분
가처분처분

3. 동일 등의 - 34조 1항 2단

2은 甲으로부터 甲과 유사한 표장을 동일상품에
출원한 바 甲 등의는 원의 등록받을 수 있다.

4. 표기.양도 권

무효사유 존재 이유로 甲의 상표권 표기.양도 권
유할 수 있다.

5. 심사청구 중지명령 - 102조 1항

2은 무효심판청구 후 심사청구 중지명령할 수 있
다.

- 이 하 여 바 -

시험장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최고 등급
인 것 같아요!

논필수라도 거의 필요하고 카톡, 문자를
다 너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현이랑요 ㄹ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서]

I. 1문(1)

1. 무표상판 의의/취지 (117)

상사의 원권성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이 행하여 무표
상판권자 요구 된다

2. 표의 상판권자의 권력

(1) 이해관계인 의미 (4세)

상표권 등록으로 합당한 본이익 받거나 받을 당려가 있어서 그소유에
관심. 현상적 이해관계는 가권가능 판한다

(2) 16조

표은 2의 등록상표와 유사상표를 식별. 등록 받은과로 2상표권 행이
식별. 현상적 이해관계는 지므로, 심판행위 권력이 없다. 이하 불판
상판권자

3. 무표사유 종류

(1) 34D 11 후단 위반 (적용)1) 의의/취지 (4세)

2상표의 식별력 또는 평등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상표의 2상표의 가권가능 보이기 위한 사의의 규정이다

2) 2상표 사유

2020년 3월부터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DAKGO가 2상표인 상표로 인식
되므로 2상표 환시 (24.5.10) 기준 #상표는 2상표이다

3) 시벌의 손상 여부

① 의미 (내제)

상표와의 동일한 연관성, 즉 동일분류표지성을 훼손하는 경우이다

② 판단 기준 (내제)

상표 유사성, 외형상등의 인식도, 식별력강조, 혼란인이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실제 연상작용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사안

Good

i) 상표 유사성

2상표를 Chem, MEDIC 등 외형상등의 백신 등에 대해 시벌의 약이나 미약하므로, 1상표의 외형성을 통해 식별력이 있는 DANG가 약이다. 약이 동일하므로 유사한 상이다

ii) 외형상등 인식도, 식별력강조

1상표는 1960년 부터 마크 등 라세리움으로 사용된 상표로 20년 후부터 처음 외형상등 인식도 취득한바 그 식별력 강도가 상당히 높다

iii) 연상작용 의도 / 실제 발생 여부

의약품 제조사인 2이 백신 등 외형상등이 아닌 DANG를 사용 하던 편중성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때 2이거 1상표 연상을 의도한 가능성이 일어보이고 1상표의 외형성에 비해 실제 연상작용이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iv) 조치

2의 외형상등은 1상표의 식별력 손상 정도가 없다.

1) 결론

~~그 동작성능을 24D11후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2) 34D13 위반(적극)

1) 의미/구분 (사실)

주제와 관련된 수의에 대해 동작성능의 크기를 인식된 것의 동일성을
생각 부정한 목적을 수반하는 것은 동작성능을 받을 수 있다. 동작성
제상능은 관여자의 신용 기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심사기준

상호 동일·유사한 의의와 목적의 상능은 부조에 해당된다

3) 사실

주제와 관련된 개형성이 편승하다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관
비문서한 상능인 이익을 추구하여 사물의 손상 또는 훼손을
24D13 위반이다

4) 34D13 위반(적극)

24D11후관, 13 위반의 '인용성능'에 해당된다

8.5



II 선행의

1 무의 관하는 선행의 유형 및 범위

(1) 유형 - 11항 특수성판

1) 의의/특성 (특이)

① 선행자가 얻은 유사범의 내지 유사물의 경우, 권리인으로서
 임의가 될만한 식별가능하도록 한다 ② 이는 선행자에
 의해서 얻은, 복제가능 배제하여 유사이익, 선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특수성판 대응상표 특성 (특이)

① 대응상표 특성

i) 반드시 유사·비경쟁의 판권권인 특성의 존재로서 유일성
 즉하에 ii)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거나 마땅치 않으므로 상행위
 ② 사안 iii) 또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로 있다.

무상표는 매우 지명한다. 특수성판 특성 특성 특성

3) 특성 판권 (특이)

대응상표와 유사·지명하러 2 대응상표 존재 및 불명확한
 특성의 사안이 있으나 판권 특성이다 (특이). 무상표 지명하
 바 특성 판권 특성 특성

4) 유사범의 사용 여부

① 판권특성 (특이)

등록상표 2개는 사용의 경우보다 상행위 판권 특성 특성
 판권에서 특성 판권 특성 특성 특성 특성 특성 특성

공정행위법

(2) 사후에 대한 조치

1) 민사상 조치

침해금지 청구(101), 손해배상 청구(109), 신용회복청구(113), 부정행위
반환청구(민법 174)

2) 형사상 조치

과태료, 권리징, 형사처벌(230), 몰수, 양양처벌, 석방명령 등

3) 기타조치

국채권 관리법위 식인 실명(21), 가맹주-가외분, 회계처리 정지

6

III 원문 A)

I 조의 양면

(1) 동일사용권 (89)

상조권자는 그 동상권을 타조권자에게 양하여 동일 권자를 취득한다

A) 취득성권 취득 효과-강제포(119①)

취득성권 취득으로 부터 양자는 양하여 상대방의 소유인라

B) A인 - 3가지 양면

① A는 자신의 동상권에서 같은 동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1991년 위조행위 이득금처벌법 조항이므로 유능하게 존재

하는 기간 동안 동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A의 동상권과 B의 동상권이 존속하는 한계가 아니므로



II 환(2)

8

I 34D13 법리

(1) 의미 / 취미 (사제)

특허권의 원리 예외로, 국내의 수탁자에게 특허권의 권리로서의 인식으로 획득한 상한나 유사발명에 부당한 목적이 없는 상한는 특허받을 수 있다. 모방의 상한에 대해의 신용으로 하기 인정
이라

(2) 인식으로 권리 / 판단 기준 (사제)

① 특허권의 권리로서의 인식을 위하여 반드시 복수의 추가에서 일정한 판권이라 @ 사외인, 통행, 사외인, 통행 등 상한에 대하여 사외인 통행은 인정수탁자에게서 인식으로 인지는 가능할 것임

(3) 상표, 상품 외관

상표는 동일 유사해야 하며, 상품은 개성이 없다

(4) 부정한 목적 관련

1) 의미 (사제)

특수권 상한에 신용 부당한 권리를 하는 것은 인정

2) 구체적 판단 기준 (사제)

상한 인식, 권리의 범위, 상한 유사성, 유사 정도, 유사 목적, 유사 목적의 정도, 특정한 사외인에게 준비 여부, 자외인 통행, OPUS 등
은 통행에 대해 부정한 목적 여부 판단한다.

2 甲의 특허판 인가가능성

① 2차권 타당여부 (특허)

1) 타당

모방대상상과 개량상을 행하기 위한 목적을 목적으로
사출된 것임으로 모방대상으로 파악이 되는 경우는 해당

2) 사안

甲의 특허상과 스크린리테팅을 통해 유사한 것인 '음료'란
위한 목적의 부속의 사출은 사출인물 모방대상
상과 개량이 어느 것을 나타 2차권 부속이다

② RAD의 타당여부

1) 인식을 양면 (특허)

특히 인식을 기록을 열리만 2의 권리 (24.10.10) 기준 甲
상과 개량 후 권리변화하여 부속에서 인정상이다

2) 상모 유사여부 (특허)

양면의 상모가 모타브가 권리의 침해하는 표지 등
한정 조건의 각도와, 배열의 두께, 위치의 배열 등 사출
각이가 원의 이노 동등상의 경우 이진과 관측하여
각면의 2차권 인식을 대비하는 바 (특허). 또한 후술자에게
특허인상과 개량이 상모 유사성이다

3) 타당한 목적 목적 (특허)

양면의 상모를 권리, 유사한 것, 2차권으로 동등하고
각면의 운영이나 한계점 관련 관계에 있음. 후술의 2차권



18

[문제3]

I 선택(1)

1 2의 대응주체 - 심의기능

(1) 심의기능 의의/구체(162)

법원에 의해 재판권을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법원에 위임한

심의 기능을 지칭하는 말이다

(2) 3차D3 관련 대응(소극)

D 의의/구체(164)

과다심판 채택과 권고성이 없으므로 가심 심을 할 수

없다

과판심기준(164)

지위상과 관계, 상의 양상, 개시심결을 상응시켜야 객관적

판정한다

가) 양심기준에 불과한 경우(164)

의심적이나 상을 보고 그 상을 양심기준 상에서 판정

하여야 할지 여의한다

나) 사안

Good!

① 조별. 하나의 관청. 조별결과를 원인으로 하는 과량품이 다수반수에

존재하는 경우. 조별결과를 원인으로 하는 과량품이 다수반수에

존재하는 경우. 조별결과를 원인으로 하는 과량품이 다수반수에

존재하는 경우. 조별결과를 원인으로 하는 과량품이 다수반수에

존재하는 경우. 조별결과를 원인으로 하는 과량품이 다수반수에



의미

(3) 34D2 관련 관련 대응 (의미)

1) 의미/취미 (의미)

특정분야에, 특정 개인 또는 물건을 특정 분야이다

2) 특정인의 의미 (의미)

지적상품이 가진 성격과 다른 성격 가진 것으로 인식하게 될지이다

3) 특정인의 관계 (의미)

상관 부위 및 인물이거나 사회경제적 인식하는 경우나 다른 상품에 대해 부속 관계가 있어야 한다

4) 경제적, 부속관계 판단 (의미)

특정계통인지 여부, 개선, 용도, 외관 형태 등 계통을 공유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5) 사안

① 부속관계로부터 개별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는 확장성을 판단한다가 동시공존가능 인식하지 못하므로, 관계가 형성되어야 34D2 관련이 인정하지 않는다 ② 그은 이다 관련 대응 부속관계

(4) 34D13 관련 대응 (의미)

1) 의미/취미 (의미)

특정인의 취미(의미)로 확장대응성으로 유사성(의미)에서 형성된 목적을 가진 상품 종류 추가하다

2) 사안

① 2의 유사성(의미)가 34D13의 인식은 확장하여 판단한다



② 甲생의 2차사유는 2형(별)짜. 클라워안라이즈 바우
안 상표인바 34DB 적용 ~~다~~ ③ 여러 특질 사정이
있을 2은 이와 같이 2을 불가하다

(5) 34DB 권리 대응(소유)

1) 계획기간 의의/취득(122D) **Good**
신체공학및공학 변태에 대한 권리 가능하다. 이는 변태에
주요한 작성 인정을 권리이다 (부제)

2) 사안

2의 신학 생들의 실적은 16.5.3 이므로 변태(24.9.16)
기후 이미 변태 2년 2년바. 34DB 무르사유로 권리인 2년

2 생각

2은 각 사유에 대해 2을 불가하다, '가장 관련' 2년

11.5

II 사유(2)

1 2의 등에 2년 2년

(1) 부정사유 권리 2년 2년 2년

1) 의의 / 취득 (4년)

2사유인이 유사행위나 부정사유로 상권을 권리인 2년 이는
상권권자에게 상권 가위 2년 2년 2년 2년
부위하여 상권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 甲상표 乙상표 권리충돌

① 甲상표는 출원일 무렵부터 근대까지 상용이었던 사용에 따라
리왕에게 이전 권리로서 인식될바 된다 ② 乙상표는 후래-계통
있지 않은 일대만 써서 후행인의 후래-계통의 인식은 판
사도르 (사제) ③ 甲상표는 乙상표와 직접 충돌

3) 유사상표의 사용 여부

1) 판관기준 (사제)

문헌으로는 2012 사형 제199호나 실사용상표의 乙상표와
상대에게 권리인권충돌이 큰 경우. 유사상표의 사용이다

2) 사안

甲의 신용상표 2012 사용시와 甲의 실사용상표 '로열리버'
가 甲의 乙상표와 상대에게 권리인권충돌이 크므로
유사상표의 사용이다

4) 후래-계통의 권리충돌 여부

1) 판관기준 (사제)

각 상표의 기원상표권자를 관계부속기업에 귀속하여 일반상표
후래-계통충돌여부가 있는지 후의 리는 이를 상표-유사상표
변형상표. 2차상표관계. 사형간. 실용. 후래-계통과 일반
상표를 관계하여 판단한다

2) 사안

상표의 유사상표가 열약 카이비 부리한 점. 2차상표 권
품의 중점. 유사상표 사용기간. 실용 등 역시 일반상표의

특수인 등록번호 외라

h) 경우

¹²⁰
~~119~~가사위아 외라 인용번호 예상된다 이 경우 심결판결의
근거를 관여한 소액인가 (119⑥)

X (2) 특수인 등록번호 (119④3) **적극!**
1) 의의/특이 (사예)

특수인 등록번호 부여. 특수인 등록번호 부여. 소액인 경우 특수인
등록 시도하는 경우이다

2) 구체 명칭

상표권과 2, 3항권과 2, 3항을 구분하는 '상표상표권' 상표
사정이 있다.

3) 2 등록상표 범위

① 사예

2 등록상표와 2항권이나 3항권상표 등록번호 부여한 경우
한가

② 사안

2항의 '로열티비' 상표사안을 2항 등록상표권과 2항권
한가 2항권상표 등록번호 부여한 경우이다.

4) 결론

이판결이외에 부여되어야 하는 2, 3항 구분
상표상표권은 사안바 다르므로 '인용번호' 예상된다

6

[제4]

1. 2이 받은 여상 가결이유 - 34011

1.5

(1) 34011 의의/취리(44대)

· 선인 중상 상고리와 선인 보로. 중상중상에게 위해, 유사범위내 상고로 중상 받음 수 없다

(2) 34011 관관시범 (34011)

중상중상정정시 기준을 관관한다 (34011). 34011 64명여는 중상중상시 중상 기준까지 기준을 관관한다 (44대)

선인 의무의 해지요!

2. 2이 극복구리 밑 근거

(1) 부호심판 (44대)

1) 의의/취리 (133)

심사의 한계선을 인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인 무는 상고로 받음 수 없다

2) 2 관관인 중상 환부 ↓

1 상고리 중상과 중상중상에게 받거나 받음 받거나 받아서 상고로 받음. (44대) 이해관계가 있는가? (44대)

중상 중상인 이유로 기각이유 중상 받음으로 중상인 이해 범위가 있어서 중상중상인 받음

3) 34011 위반 무리사유

1) 의의/취리 (44대)

최소심판 심리성 보강위해, 최소심판 중상중상에게 최소심판까지 이후 34011의 기간 동안 유사범위내 상고로 받음 수 없다



"개정 34(3) 피내역"

② 사안

2의 119D가 위드실판 권구일(23.10.16) 이후 위드실판 권구일(24.8.20) 사이인 24.15에 유사상표를 등록신청 가능하게
권구일과 34(3) 위반이라

A사안 + 뒷부분 34(3) X. 11. 12부. 13 무효사유(권구일 관련)
34(3)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권구일이 2등여부청구권 행사 전까지
인양상표를 등록신청할 수 있다

(2) 위드실판(소주) → **실용성 없음 (권구일 등록일 기준 ↓)**

A사안 A항 사정판. 실용성판(25.3.30)은 복제 여부
판단이 지나지 않아 119D.3 위드실판 등록 불가하다

(3) 위하. 표기 권유

34(3) 무효사유 없음은 이유로 2등여부청구권 행사 전까지
권구일 등록 가능

(4) 공중의 지시 외의 34(3) 관련

신용권 침해와 무효 복제 권구일의 발아 2등여부청구
권까지 공중의 지시 외의 34(3) 관련 있다. 유사범위 내 상주이므로
가능하다

(5) 양수 권유

부의 신원청구 가능) 2등여부청구권 행사 전까지
까지 양수 받아 타인성 주를 가능하다

(6) 심사청구 신소 (110D)

무효상표 등록되지 않기 까지) 2등여부청구권 행사 전까지
신소 가능

(11) 무효사유

① 2개의 조어 Y와 유사한 2의 심사대상은 국가 사무에 관한
인식론을 취득한바. 이와 관련하여 3409 11.12후단,
13위반의 무효사유를 가지므로 인정받아야 무효의 상충
수직시각수 원의

② 3409-13의 3자는 사물상 식별의 상충대상인 원의
외의 침해의 상충 범위 수직시각수 원의 (특수)

6.5

9항은 상품 바꾸기로 해당 X

11항, 12항, 13항은 별도 목적의

개시 기능에 관한 것

특히 문맥상 사실관계에 11항, 12항

공격점이 있다보니 별도 목적으로

본질을 달리 평가하면 중을 드립니다!

수직시각수 원의. 하위항?''